

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0. 10. 1(금)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10. 8. 19
- 나. 제안자 : 인천광역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10. 8. 20
- 라. 상정일자 : 2010. 9. 3(제187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)
 - 제안설명 : 자치행정국장 황의식
 - 검토보고 :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
 - 질의 및 토론
 -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시정시책에 대한 자문과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및 대안 제시 갈등요인 해결 등 지역 원로들의 고견을 수렴하는 기능의 시민원로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시민원로회의는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함(안 제2조)
- 시민원로회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(안 제3조)

- 원로회의의 정기회의는 연 2회,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의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- 원로회의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간사는 자치행정과장, 서기는 자치행정담당사무관이 하도록 함(안 제6조)
- 원로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동 제정 조례안은

- 민선5기 출범을 계기로 우리시와 국가발전에 기여한 각계 원로들의 식견과 경험을 시정 기본정책 수립 및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우리 우리사회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「시민원로회의」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(안 제2조)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민원로회의 기능을 시정의 주요 정책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, 시정발전을 위한 갈등요인 해결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
- (안 제3조, 안 제6조) 원로회의 구성은 의장, 부의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

○ 검토의견으로는

- 원로회의 위원은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회의시 많은 위원으로 효율적인 의견수렴에 제약이 있을 수 있는 바,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
- 부칙 제2조에 조례의 존속기한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정되어 있는 바, 존속기한을 한정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 질 의 >

- 허회숙, 신동수, 전원기, 차준택, 홍성욱 위원
 - 조례안이 통과하기 전에 긴급히 간담회를 사전 개최한 이유는?
 - 조례 존속기한을 정한 이유
 - 시민원로회의와 시의회 간의 정립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. 형식적인 기구 전략 방지, 옥상옥 구조 방지 촉구
 - 운영세칙, 위원 구성, 회의 등이 있을 시 시의회에 보고

< 답 변 >

- 자치행정국장 황의식
 - 시정현안 사항에 대하여 자문, 고견을 듣고자 한 사항으로 사전 간담회 개최는 아님.
 - 지방자치법에 자문기관은 5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음.
 - 운영세칙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면 시의회에 보고

5. 토론요지

- 가. 찬 성 : 홍성욱, 신동수, 이재병, 전원기, 차준택, 허회숙 위원
- 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(재석위원 6명 찬성 : 6명)

7. 소수의견 요지

- 없 음

8. 기타 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붙임 :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. 끝.

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정방향과 당면 현안사항 등에 대한 지역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(이하“원로회의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
2. 시정발전을 위한 갈등요인 해결 등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시장이 원로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3조(구성 등) ① 원로회의는 의장,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4조(의장의 직무) ① 의장은 원로회의를 대표하고, 원로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회의) ① 의장은 원로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원로회의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
③ 원로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간사 등) ① 원로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며, 서기는 자치행정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.

제7조(의견청취 등) 원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8조(수당 등) 원로회의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원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로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존속기한)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